

Legal Update

Novel Coronavirus (COVID-19): Considerations in M&A Due Diligenc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M&A실사 시 고려할 점

원격 실사 (Virtual Due Diligence Capabilities)

M&A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실사가 완전히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프로토콜을 대상회사(target)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요 문서를 VDR 등을 통해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현장실사에서 진행되었던 주요 회사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 (Material Contracts of the Target)

- 대상회사가 체결한 각종 주요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약이행을 중단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이행 의무를 중대하게 변경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목적 달성 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또는 계약해지(termination)와 같은 규정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 "영업 및 공급망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회사, 혹은 대상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주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거래처, 공급업체, 유통업체, 채권자 등 주요 거래 상대방의 익스포져(exposur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고 약칭합니다)의 확산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영업 및 공급망 관련 (Operational & Supply Chain Considerations)

- 대상회사가 공급자에 해당하는 주요 공급계약상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의 인수인은 불가항력을 원용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이행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떠한 완화(mitigation)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공급업체들이 주요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불능을 선언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경우, 다른 대안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안업체를 사용함에 따른 비용, 당분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급을 대상회사가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에 영향이 있었는지 혹은 근 시일내에 영향을 받을거라 예상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봉쇄, 락다운(lockdown), 여행금지, 국경폐쇄 등의 이동제한하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기인하는 대상회사의 수익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및 코로나19가 소비행태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대상회사가 예상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대상회사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급망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Data Privacy Considerations)

대상회사의 인수인은 대상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회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근로자 혹은 방문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의료 정보(체온, 증상발현 정보 등)를 취득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의료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 또는 제공하고 있는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득할 때 어떠한 종류의 공지사항 또는 동의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미국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의 적용을 받는 기업일 경우, 즉 대상회사가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종류의 건강 정보 취득은 HIPAA의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새로 시행한 회사 방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시행한 방침에 따라 대상회사가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과 절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회사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비롯한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 (Tax Considerations)

- 대상회사가 소득세 또는 고용 관련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금 납부 및 예치 관련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순영업손실이월액(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이 있는지 여부, 세금환급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에 관한 법률(CARES Act)'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2019 또는 2020년도의 이자비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 경우 강화된 제한에 따른 영향을 대상회사가 모델링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분배구조를 파악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부터 기인한 비용을 계열회사로 전가할 계획이나 일시적으로 손익을 재분배하기 위해 계열회사간의 거래가격책정(intercompany pricing)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영상 혹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인지를 확인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중인 대상회사의 근로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및 미국 주정부세와 관련된 복합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재무 및 회계 (Finance/Accounting Considerations)

- 코로나19가 대상회사의 미래 재무성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재무예측표에 미반영된 실질적·잠재적 부채 노출도(liability exposure)를 파악해야 합니다.
- 지불능력 관련 위험이나 여하한 신용공여 상의 약정의무(covenant) 이행불능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상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대상회사의 대출조건 충족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코로나19 와 관련된 중대한 우발상황(contingency)을 공개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와 회계감사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재무보고 시스템,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통제 및 절차 등 대상회사의 영업 유지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가 대상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기업공시를 하거나 관련 공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신용등급 확인 또는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 및 복지 (HR & Employee Benefits Considerations)

대상회사의 인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상회사의 근로인력 변화 등 코로나 19가 HR 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등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화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영향을 받은 시점 및 그 규모, 대상회사가 미국 '근로자 적응 및 재훈련 통지법(WARN Act)'에 따른 통지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결근, 유급 병가 등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을 청취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봉쇄된 지역 소재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나 계열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나 배당금에 제한을 두는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에 관한 법률(CARES Act)'에 따른 세액 공제, 대출, 용자 탕감 또는 다른 혜택을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등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나 질병관리본부(CD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행 프로토콜 & 완화 계획"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회사가 가입한 보험 (Existing Insurance of the Target)

- 기업휴지보험 등 대상회사가 기 가입한 보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여하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지 (또는 청구할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청구의 종류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기 가입한 보험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할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진행한 경우, 보험사가 현재까지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팬데믹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안들을 부보하는 보험을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의 산업재해 보상청구가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그러한 산업재해 보상 및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체결한 보험의 부보 범위, 보험료, 리스크 관리 (R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헬스케어 회사인 경우, 대상회사의 의료배상 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부보하는지와 해당 보험이 팬데믹 부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Remote Work Capabilities)

- 대상회사가 재택근무 정책이나 실무에 관한 서면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 중이거나 격리된 임직원이 대상회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사회 개최 및 관련 업무, 주요 인사의 참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생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IT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및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 시스템이 지원 가능한 최대 사용자 규모
 - 대상회사의 재택근무 플랫폼이 민감한 정보 전달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 재택근무 중 IT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업무상 필수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를 재택근무 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택근무 상황에서 가능한 화상회의나 음성회의 시스템 종류
- 대상회사가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 보안 방안을 세웠는지 여부 및 재택근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Litigation Risks)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계약상 또는 노동, 고용과 관련하여 계속중인 소송, 예상되는 소송,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인사 및 복지"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행 프로토콜 & 완화 계획 (Existing Coronavirus Protocols & Mitigation Plans)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급망 또는 기타 운영상의 이슈들에 대한 대비책을 두고 있는지 여부나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염위험 등 불가항력에 의해 근로자들이 대상회사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된 상황과 관련한 조치와 통제가 대상회사의 영업연속성계획(BCP) 및 재난 복구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회사가 근로자 및 고객에게 공중보건 및 안전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프로토콜이 어떻게 전개되며, 프로토콜 배부 책임자가 누구인지, 각종 제안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책임자는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topics raised in this Legal Update, please contact any of the following lawyers.

Kwon Lee

+1 212 506 289

kwon.lee@mayerbrown.com

JoonBeom Pae

+1 212 506 2194

jpae@mayerbrown.com

Paul C. de Bernier

+1 213 229 9542

pdebernier@mayerbrown.com

Stephanie M. Hurst

+1 213 229 5140

shurst@mayerbrown.com